



2단계 재정분권과 전라북도 대응전략

연구진

조기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장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서론	04
<hr/>		
II	지방분권세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지방분권세 구상 및 도입 논거	06
	2. Tax sharing의 개념	09
	3. Tax sharing 관련 정책용어 검토	12
	4. 지방교부세의 Tax sharing 여부에 대한 정책이론적 평가	14
	5. 지방분권세 세입재분배효과	21
	6. 소결	28
<hr/>		
III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1. 지방교부세 당면현안	30
	2.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32
<hr/>		
IV	전라북도 대응방향	
	1. 재정분권 관련 상황 진단	37
	2. 전라북도의 대응방향	37



서론

- 정부는 작년 10월에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을 발표하면서 올해 지방소비세를 부가 가치세의 11%에서 15%, '20년에는 21%로 인상하는 세입분권을 실시하였음. 아울러 소위 재원중립원칙에 입각하여 3.57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조치도 확정된 바 있음
- 그러나 이양될 국고보조사업의 비용과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세입증가의 편익 간 미스매치 문제가 불거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와 광역도 자치단체 간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음. 물론, 행정안전부는 기능이양비를 확충되는 지방소비세로 선보전 후, 잔여액으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통합하긴 하였으나, 2단계 재정분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초래될 개연성에 대한 우려가 비수도권 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확산되고 있음
- 작년 10월 30일에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의 조세배분 구조 목표를 70%:30%로 잡고 있음.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구상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떤 국세를, 어느 정도 규모로 이양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부처 간 협의 과제로 남겨 놓 상태임
- 특히, 재정당국은 1단계 재정분권에서 관철되지 못한 (가칭)지방분권세 도입을 2단계 재정분권에서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당국은 오래 전부터 지방교부세가 정부 간 재정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투명성을 저하시키며, 지방세출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여 왔음



- 지방분권세 도입은 지방교부세 폐지를 전제하므로 세원기반이 취약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이슈가 될 것임. 물론,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설계라는 당위론적 관점에서도 이들 이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전술한 쟁점들을 검토한 후,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모습과 함께, 전라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지방분권세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지방분권세 구상 및 도입 논거

지방분권세에 대한 재정당국의 구상

- 재정당국이 구상하는 지방분권세는 시점별로 조금씩 다르게 진화되는 모습으로 제안 되어 왔으며, 아직도 그 실체는 모호한 편임
- 다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재정분권TF」에서 재정당국이 제시한 지방분권세의 개략적인 구상은 다음으로 알려져 있음
 - 재원 규모는 (지방교부세 총량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비 + α) 정도 구상
 - 배분방법은 인구, 소득, 면적 등으로 간소화하며 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한다는 개략적인 프레임만 제시
 - 다만, 지방분권세 총량의 20%는 행안부가 균형조정재원으로 운용
- 아울러, 지금까지 알려진 지방분권세 도입 논거는 다음과 같음

지방교부세는 이전재원이 아니라 tax sharing 성격의 稅

- 재정당국은 지방교부세의 본질이 이전재원이 아니라 tax sharing¹⁾ 성격의 “Tax”로 판단하고 있음

1) 국내에서는 tax sharing을 세원공유, 세수공유, 공동세 등으로 번역하나 여기서는 논란을 피하고자 원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이전재원으로 분류되어, 지방세의 위상이 낮다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② 지방세 위상이 낮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이양 등을 주창하는 진영논리의 시발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
- 또한, 지방교부세를 Tax로 분류하면, ③ 국세·지방세 구조는 76%:24%가 아니라 51%:49%이며, 2단계 재정분권의 목표 달성도 용이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추측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이전재원으로 간주하여도, 지방교부세를 지방세로 분류하면, 지방세는 113.5조 원(지방세 75.5조 원 + 지방교부세 38조 원)으로 확대
 - 이 경우, 국세 대비 지방세 위상은 지금의 24%에서 32%로 높아지며, 2단계 재정분권 목표치 30%를 쉽게 달성

복잡한 조세체계 및 재정조정제도 초래

- 안중석(2015)에 의하면, tax sharing 성격의 이전재원이 남설되어 지방세 확충 논리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정부 간 재정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임
- 즉, Blöchliger and Petzold(2009, 이하 B-P)의 tax sharing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내국세 내에서도 지방소득세와 법인세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득세와 세수를 공유하며,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는 부가가치세와 세수를 공유하고,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세 주행분과 세수를 공유하는 매우 복잡한 체계라는 것임

| 참고 : 국세·지방세의 tax sharing 현황(안종석, 2015) |

구분	국세	자주적 지방세	공동세 성격 지방세	tax sharing	비고
소득세	○	○		○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법인세	○	○		○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부가가치세	○			○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개소세(담배)	○		○	○	담배소비세, 소방교부세
개소세(기타)	○			○	지방교부세
증권거래세	○			○	지방교부세
상속세	○			○	지방교부세
증여세	○			○	지방교부세
인지세	○			○	지방교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		자동차세 주행분
교육세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농특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주민세		○			
재산세		○		○	종부세, 부동산교부세
자동차세 소유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자료 : 안종석(2015), p. 154의 <표 V-2>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자구노력 저해

- 지방교부세 확대가 오히려 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제약함
 - '98~'17년 기간 이전세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 * 이전세입 증가율 8.6% > 자체세입 증가율 4.8%
 - 이로 인하여, 지방교부세율 1%p 인상 시 재정자립도는 0.8%p 하락



- 보통교부세가 지자체의 세입확충 자구노력을 저해함
 - 교부세 증감률과 지방세 증감률의 상관성이 대다수 지자체에서 마이너스인 바, 이는 지방세가 적은 지자체에 교부세가 더 교부된다는 의미이며, 부족한 지방세를 교부세가 보전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지방세 확충노력을 저해
-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1인당 교부액이 크게 감소하며, 이로 인하여 복지비 등 재정 수요가 큰 수도권 불교부단체 등의 재원보장기능이 미흡함
 - 보통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과다 교부하여 지방세출 낭비를 초래
 -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은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큰 반면에 불교부단체에 속하여 재정운영 애로

2. Tax sharing의 개념

- 지방분권세에 대한 재정당국 논거가 tax sharing에서 출발하므로 이하에서는 tax sharing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함
- 2000년 이전 주요 국제기구의 tax sharing에 대한 개념 정의는 서로 달랐음
 - (IMF의 GFS, National Accounts) 해당 세목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 세수배분은 무조건 이루어지며, 지방정부가 세율과 과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tax sharing으로 정의
 - (OECD의 Revenue Statistics) 지방정부가 세수공유 세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세수 중 일정액이 무조건적으로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되거나, 혹은 징수를 담당하는 정부가 세수규모나 배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면 모두 tax sharing으로 분류
 - (Council of Europe)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거나 혹은 지방정부에 귀속 되는 세수공유 세수가 총 조세수입에 비례하는 경우

- 하지만 상기 분류방식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음(B-P, 2009)
 - 첫째, 통계자료마다 분류방식이 달라 동일한 지방세제도를 다르게 분류
 - 둘째, 모호한 일부 기준은 tax sharing을 둘러싼 법령과 규제들을 별도로 살펴 보아야 의미를 지니며, 이는 국제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셋째, 대부분의 분류방식에서 지역비례성(징세지원칙) 특성을 경시
- 이러한 배경하에 OECD(1999)는 지방세의 과세자주권(tax autonomy)을 측정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하여, '99년 5개 유형을 분류한 1차 시안을 제시함
- '03년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완작업에 착수 하였으며, 2006년 6개 대분류, 13개 소분류 체계로 구성된 OECD의 지방세 분류기준이 제시됨(B-K, 2006)

| 과세자주권에 따른 지방세 분류(OECD 현재 기준) |

구분	정의	특성
a.1	• 상위정부와 협의 없이 하위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율과 감면을 결정	독립 지방세
a.2	• 하위정부가 상위정부와 협의한 이후에 세율과 감면을 결정	
b.1	• 하위정부는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위 정부가 완전한 혹은 상당한 자율성 보유
b.2	• 하위정부는 상위정부가 정한 최고·최저 한도 내에서 세율 결정권 보유	
c.1	• 하위정부가 과표공제권(tax allowances)만 보유	
c.2	• 하위정부가 세액공제권(tax credits)만 보유	부분적 제한 지방세
c.3	• 하위정부가 과표공제권 및 세액공제권 모두 보유	
d.1	• 하위정부가 세입할당권(revenue-split)을 보유	tax sharing
d.2	• 하위정부 동의를 있을 때만 세수할당 변경 가능	
d.3	• 세수할당이 법률로 규정(상급정부가 회계연도 중1회 이내 하위정부 동의 없이 세수할당 변경 가능)	
d.4	• 매년 상급정부가 세수할당 결정	
e	•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세율과 과표를 결정하는 경우	자율성 제한적 혹은 전무
f	• a, b, c, d, e 유형에 속하는 않는 기타의 경우	매우 제한적 지방세
		자율성 전무

주 : Blöchliger and King(2006), p.10의 <표 2>를 토대로 연구자가 특성을 분류하였음



- 그러나 논란이 컸던 tax sharing과 관련해서는 유형 d1~d2가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한 tax sharing이며, 유형 d3~d4는 하위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구속받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뿐, 큰 진전이 없었음
- 이에 따라 B-P(2009)는 tax sharing과 이전재원의 관계를 좀 더 분명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함. 즉, 이들은 위험분담 정도, ② 용도의 무조건성, ③ 배분공식의 안정성, ④ 지역비례성 4가지 기준으로 tax sharing과 이전재원을 구분하였음
- 상기 질문 중 앞의 ①~③ 질문에 대한 답변은 異見이 없으나, 수평적 형평기능과 관련되는 4번째 질문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 이를 고려하여 B-P(2009)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위 질문에 모두 Yes인 경우 : “철저한 세수공유(strict tax sharing)”
 - ①~③에 대한 대답이 Yes이고, ④에 대한 대답이 No인 경우(즉, 수평적 형평기능이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 : “tax sharing”
 - ①~③ 중 하나라도 No인 경우 : 이전재원(보조금)

| B-P(2009)의 tax sharing 요건 |

요건	주요 내용	재정 조정	유형		
			엄격한 세수공유	세수공유	이전재원
① 위험분담 (risk sharing)	하위정부에 할당되는 세입규모가 총조세수입과 매우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서 상위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등의 변동 시, 하위정부가 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가?		Yes	Yes	No
②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하위정부가 자신에게 배분된 세입을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가? 즉, 용도가 자유로운 세입인가?	수직적	Yes	Yes	No
③ 배분공식의 안정성 (formula stability)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공유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회계연도 중 변경되지 않는가?		Yes	Yes	No

요건	주요 내용	재정 조정	유형		
			엄격한 세수공유	세수공유	이전재원
④ 지역비례성 (individual proportionality)	어느 하위정부에 할당된 세입공유 몫이 자신의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세수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가? 즉, 하위정부 상호간 수평적 재분배나 재정형평기능이 존재하지 않는가?	수평적	Yes	-	-

주 : Blöchliger and Petzold(2006), pp.4-5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3. Tax sharing 관련 정책용어 검토

tax sharing v.s revenue sharing

- McLure(2001)는 tax sharing과 revenue sharing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tax sharing : B-P(2009)가 제안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즉, B-P의 strict tax sharing이 McLure에서는 tax sharing에 해당
 - revenue sharing :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이 내장된 tax sharing
 - 지방정부는 과표·세율·징세행정권 등의 통제능력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재정관계에서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를 시정할 필요성 대두
- 따라서, 하위정부가 과세권에 대한 통제역량이 없다면, tax sharing이라 하여도 공유하는 공식이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이전재원임
- 결국, McLure는 하위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리하여 상위정부가 자신의 징수권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재원에 대해서도 배분권을 행사한다면 외형적으로 tax sharing이라 하여도 이전재원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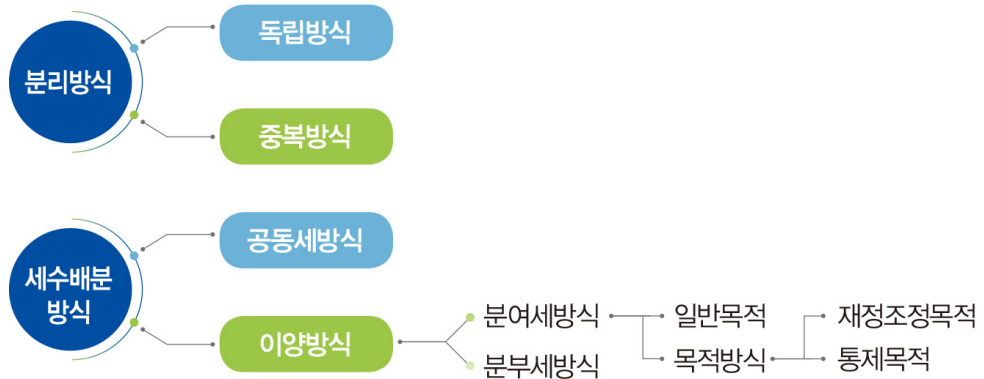


tax sharing v.s 분여세(分與稅)

- 일본의 저명한 지방재정학자 진노교수(神野直彦, 2009)는 지방세 유형을 세수분리방식과 세수배분방식으로 구분함
- 세수분리방식이란 정부계층별로 과표(세원) 및 세율에 대한 과세권을 따로 정하는 방식이며, 독립방식과 중복방식이 있음
 - 독립방식 :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가 과세권 및 징수권을 독립적으로 행사
 - 중복방식 : 동일한 과표(세원)에 대하여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가 중복하여 부과·징수하며, 부가세(sur-tax)가 대표적
 - 독립방식이든 부과방식이든 세수분리방식에서는 징수된 조세수입이 상위정부와 하위정부에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귀속
- 세수배분방식 : 특정 세목(혹은 전체 세목)의 조세수입을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이며, 공동세방식과 이양방식으로 구분됨
 - 공동세방식 : 하나의 조세를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공동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공동세방식에는 입법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보유. 어떤 조세를 공동세로 과세할 것인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하는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일처럼 공동의사결정기관이 필요하며, 조세수입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독일의 공동세 징수권은 주정부가 보유)
 - 이양방식 중 分賦稅방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수를 분배하는 조세를 지방세로 하여 지방정부가 과세하고, 세수의 일부나 전부를 중앙정부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입법권과 징세권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며, 수입권을 중앙정부가 보유(예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상납하는 중국의 請負制)
 - 이양방식 중 分與稅방식 : 분부세방식과 반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수를 분배하는 조세를 국세로 하고, 세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방정부에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입법권과 징세권을 중앙정부가 보유하며, 수입권의 일부나 전부를 지방정부가 보유

- 결국, 神野直彦은 McLure의 revenue sharing를 분여세방식의 지방세, tax sharing은 공동세방식의 지방세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됨. 이는 지방교부세가 공동세는 아니지만, 재정조정 목적으로 세수를 지방에 차등적으로 이양한 지방세의 유형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고유재원이며, 자원보장기능과 재정조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세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유의

| 지방세의 유형 |



출처 : 神野直彦(2009), <그림 3> 재인용

4. 지방교부세의 Tax sharing 여부에 대한 정책이론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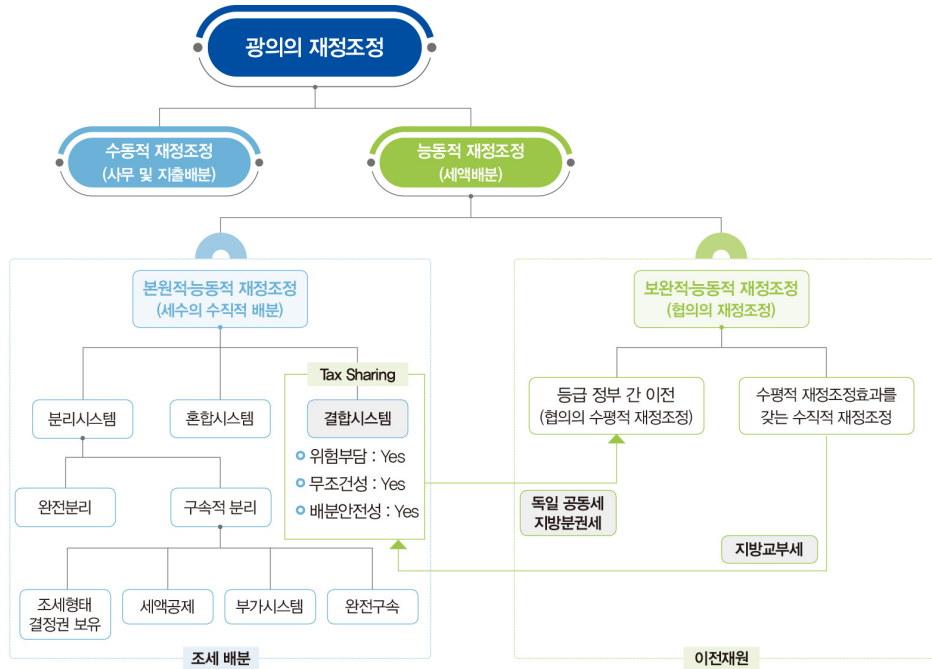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교부세 평가

- 독일의 저명한 재정학자 Hausner(2003)에 의하면 정부간 재정관계의 총체가 바로 재정조정임. 즉 정부 간 사무배분(재정수요)과 조세배분, 그리고 양자의 겹을 메꾸어 주는 재정조정의 三者一致의 총체를 재정조정제도로 정의함
- Hausner는 재정조정을 수동적 재정조정과 능동적 재정조정으로 구분함



- 수동적 재정조정 : 제도적으로 주어진 사무배분과 이에 대응하는 지출책임의 배분으로서 재정수요가 수동적으로 결정
- 능동적 재정조정 : 주어진 사무경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정부 간 세입배분
- 정부 간 사무경비 분담은 조세배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본원적 재정조정이라 하며, 조세배분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재원이전을 통하여 보충하는 보완적 재정조정으로 대응함
- 조세배분은 정부계층간 과세권 배분으로서 분리방식, 결합방식, 양자를 혼합한 방식으로 구분되며, tax sharing은 결합방식에 속함
 - 분리방식 : 세원의 선택, 형태, 징수의 권한을 정부계층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는 완전분리방식과, 권한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구속적 분리방식으로 구분
 - 결합방식 : 정부계층간 조세수입을 나누는 공동세 방식으로서 특정 계층의 정부가 징수를 하고, 다른 계층의 정부에 세수를 배분
 - 혼합방식 : 분리방식과 결합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세수가 큰 조세는 결합방식, 세수가 적은 조세는 분리방식으로 배분하는 제도로서 독일의 조세제도가 일종의 혼합방식에 해당
- 보완적·능동적 재정조정은 흔히 사용하는 재정조정을 말함. 즉, 수동적으로 주어진 사무배분의 경비(재정수요)를 세수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미스매치 부분을 정부 간 이전재원으로 보완하며,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수평적 재정조정 : 동급 정부 내에서 부유 지자체의 각출금으로 빈곤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정
 - 수평적 재정조정효과를 갖는 수직적 재정조정 : 상급정부에서 하위정부로 이전하며, 이 때 재정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전하면, 결과적으로 부유 지자체에서 빈곤 지자체로 이전되는 수평적 재정조정효과가 발생

| Husnaer 재정조정론 관점에서 본 지방분권세와 지방교부세 |



- Hausner의 재정조정론 관점에서 보면, tax sharing을 어느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조세로 볼 수도 있고, 이전재원으로 볼 수도 있음
 - McLure의 revenue sharing은 이전재원 관점이며, 곤노교수는 조세배분에 무게를 두고 tax sharing을 지방세의 한 유형으로 분류
 - 그리고 곤노교수가 지방교부세를 공동세로 분류한 이유는 지방의 고유재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나, 일본의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1항에 “국가가 교부하는 稅”로 규정하였기 때문

[참고 : 일본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1항]

(용어의 해설)

제2조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지방교부세 :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소득세, 법인세, 주세, 소비세 및 담뱃세 각각의 일정 비율의 액으로 지방단체가 공통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부하는 稅를 말한다.



- 한국의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법 제1조에 재원보장과 재정조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의 용어 정의에서도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 따라서, 한국의 지방교부세 “수평적 재정조정효과를 갖는 수직적 재정조정이 일차적인 정책목적이며, 이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법정률 방식을 채택”한 것이므로 이전재원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함
 - 독일의 공동세는 국가 통합을 목적으로 먼저, 정부계층간 세수의 수직적 배분을 구축한 후, 이차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주정부간 수평적 재정조정효과를 지향
 - 한국의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전재원에서 출발하며, 단지 제1조 및 제2조 제1항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 법정률 제도를 채택
- 즉, 한국의 지방교부세의 본질은 이전재원이고, 이 본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tax sharing 성격의 법정률제도를 운영하는 것임

조세정책론적 관점에서 지방교부세 평가

-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tax sharing에 대한 개념 및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신의 GST(Goods and Service Tax)가 tax sharing이 아니라 이전재원이라는 입장을 고수
 - B-P(2009) 조차도 자신들이 제시한 개념 및 분류기준이 각국이 처해있는 여건에 따라 이견(異見)이 있다는 점을 인정
- OECD도 이런 이유로 tax sharing에 대한 공식 통계는 발표하지 않으며, 단지 다음 표 “revenue sharing과 tax sharing의 특성 비교”의 과세자주권을 발표함

- 그러나 OECD 분류기준을 적용해도, 지방교부세를 tax sharing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는 국세로서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며, 총액도 법률로 정해져 있어 자치단체의 간여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tax sharing이 아니라 revenue sharing(즉, 이전재원)임
 - (revenue sharing) 상급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며, 세출예산에 반영 후 하위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 (tax sharing) 헌법이나 법률 상 과세권이 상급정부와 하급정부 모두에 부여될 수 있으며, 세수공유 대상의 조세수입으로 제한되고, 상위정부와 하위정부의 세입이 개별적으로 분리 반영

| revenue sharing과 tax sharing의 특성 비교 |

구분	과세권 주체	공유 재원	공유 단계	배분 공식	재정 형평화	재원 특성
revenue sharing	상급정부	歳入 (조세+세외+기타)	상위정부 세입·세출 ↓ 하위정부 세입	법령에 규정	수직적	분여세 성격을 갖는 이전재원
tax sharing	상급정부, 하급정부 모두 가능	특정 稅收	상위정부 세입 ↓ 하위정부 세입	법령에 규정	수직적, 수평적 모두 가능	공동세 성격

- 둘째, 세입할당권 및 세수배분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어 지방교부세를 tax sharing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름
 - 법규에 규정된 공식에 입각하여 행정안전부가 교부액을 산정·교부하며, 산정제도 변경 시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동의 불필요
 -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d3 및 d4 정도만 충족하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인 tax sharing
 - 만약, 법규 외 행정안전부가 일부 재량적 기준으로 교부액을 산정하는 요소가 있다면, d3 조차도 부분적으로 충족하여 tax sharing 보다는 이전재원 성격에 더 가까운 편



- 다만, tax sharing 여부와 별개로, 지방교부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d1 및 d2를 상당부분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은 필요

| OECD의 지방세 분류기준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tax sharing 판단 |

OECD의 tax sharing 관련 지방세 분류기준	지방교부세
d1. 하위정부가 세입할당권(revenue-split)을 보유	No(중앙정부가 할당권 행사)
d2. 하위정부 동기가 있을 때만 세수할당 변경 가능	No(중앙정부가 배분권 행사)
d3. 세수할당이 법률로 규정(상급정부가 회계연도 중1회 이내 하위정부 동의 없이 세수할당 변경 가능)	대부분 Yes이나, 일부는 No (측정항목, 측정단위 등 산정제도 관련 주요 내용이 법령에 규정, 지자체 동의 불필요)
d4. 매년 상급정부가 세수할당 결정	Yes(매년 중앙정부가 교부액 결정)

정부 간 이전재원 측면에서 지방교부세 평가

- Bahl and Linn(1992)은 재원규모 결정방식과 배분방식 기준으로 정부 간 이전재원의 유형과 정책효과를 논한 바 있음
 - 이들에 의하면, 재원 규모를 상급정부의 세목에 연동하여 결정하면 A유형~D유형, 총량을 상급정부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면 F유형~H유형, 하위정부의 집행비용 기준으로 결정하면 K유형으로 분류
 - 배분기준으로 분류하면 징세지주의는 A유형과 L유형, 공식지주의는 B유형과 F유형, 특정사업 지출(비용)은 C유형과 G유형, 재량결정은 D유형과 H유형
 - 국세의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A유형~D유형은 지방세입의 안정성 및 자율성,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나, 지방세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나 징세노력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기능도 있는 이전재원으로 평가
- Bahl and Linn(1992)의 이전재원 분류기준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B유형에 속하며, 나머지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C유형임
 - 지방소비세의 경우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징세지주의를 대표하는 통계라면 A유형으로 분류 가능

- 그러나 거주지와 실제 소비지역이 다르고, 부가가치 자체가 실제 소비행위를 대표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1:2:3) 안분비율로 배분하는 등의 현실을 고려하면 B유형에 가까운 편
- 이것은 A유형과 B유형은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동세이나, 정부 간 이전재원 이론에서 보면 이전재원의 한 유형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
- 만약, 재정당국 논리대로 A유형과 B유형을 공동세로 간주할 경우, 우리의 지방교부세 처럼 공식으로 배분하고, 용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매칭비가 없는 일반정액보조금 (general lump-sum grants)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세라는 조세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함
- 요컨데, 지방교부세가 공동세와 이전재원 중 어디에 속하는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의 문제이지, 논쟁을 벌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운용하는 제도적 특성, 정책목적 등을 기준으로 각국이 이전재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공동세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의미
 - 이전재원으로 분류하든, 공동세로 분류하든 세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

| Bahl and Linn의 정부 간 보조금 유형과 한국의 이전재원 |

구분	재원규모 결정방식		
	국세 일정비율	임의결정	특정사업 지출
조세징수주의	A (지방소비세,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L	N/A.
공식주의	B(공동세)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F (균특회계 자율계정)	N/A.
특정사업 지출	C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소방안전교부세)	G (균특회계 지원계정, 국교부조)	K
임의적 결정	D	H	N/A.

주 : ()내 한국의 이전재원은 연구자가 Bahl and Linn(1992)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5. 지방분권세 세입재분배효과

지방소비세와 조세구조

- 국세 결산치는 KOSIS에 '18년까지 수록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지방재정연감에 '17년 결산치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17년으로 시점을 일치시키기로 함
- '17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이 시점의 지방소비세율은 11%이며, 국세는 255.6조 원, 지방세는 81.54조 원으로 조세 총량에서 지방세 비중은 24.2%임
-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었으므로, '17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는 84.7조 원으로 증가하며, 국세는 252.4조 원으로 줄어듦. 같은 논리로 '20년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인상되면, 지방세는 89.4조 원으로 확충되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는 73.5%:26.5%가 됨
- 즉,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된다 하여도 조세 총량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은 24.2%에서 26.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 2단계 재정분권의 조세구조 목표치 70%: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101조 원, 중장기 목표치인 60%:40% 달성에 필요한 지방세 총량은 135조원으로 추정됨. 목표치 30%에 한정해도, 지방세 총량이 81.4조 원에서 101.1조 원으로 20조 원 가량 확충되어야 하므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세 및 법인세의 지역별 분포 |

(단위: 억 원)

구분	지방소비세율					
	'17년 현재 (11%)	15%	21%	35.7%	63.4%	
지방세	소계 ①	814,837	846,600	894,246	1,011,231	1,348,307
	지방소비세	87,351	119,114	166,760	283,744	503,837
	지방교부세 ②	423,440	417,612	408,161	387,409	347,030
	국세 ③	2,555,932	2,524,168	2,476,522	2,359,538	2,022,461

구분	지방소비세율				
	'17년 현재 (11%)	15%	21%	35.7%	63.4%
조세 총량 ①+③	3,370,769	3,370,769	3,370,769	3,370,769	3,370,769
지방세 비중	24.2%	25.1%	26.5%	30.0%	40.0%
지방세+교부세+국세	3,794,208	3,788,381	3,778,930	3,758,177	3,717,798

자료 : 지방세는 지방재정연감 결산치, 국세는 KOSIS 수록 결산치

주 : 지방재정연감에 수록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합계치이므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운영 상황 보고'의 보통교부세를 토대로 소방안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제외된 추계치임

지방분권세 세원의 지역분포

- '17년 결산 기준, 국세 총량은 약 255조 원이며, 전라북도는 1% 정도를 차지함
- 지방분권세 세원인 소득세 및 법인세 총량은 '17년 결산 기준으로 약 157조 원이며, 전라북도에서 징수되는 규모는 전체의 2%인 1.6조 원에 불과함

| 소득세 및 법인세의 지역별 분포 |

(단위 : 억 원)

구분	국세		소득세+법인세			3년 평균 비중
	징수액 ('17년)	비중	'15년	'16년	'17년	
합계	2,555,932		1,222,348	1,360,111	1,572,260	42.6%
서울	769,630	30.1%	515,839	576,510	677,321	7.2%
부산	193,376	7.6%	95,921	102,770	96,751	2.7%
대구	59,140	2.3%	32,438	38,526	39,376	3.2%
인천	68,643	2.7%	39,739	44,281	48,486	1.8%
광주	39,947	1.6%	20,827	25,619	28,850	1.6%
대전	49,596	1.9%	22,019	23,769	17,917	1.8%
울산	120,956	4.7%	24,195	23,841	23,890	22.1%
경기	354,579	13.9%	240,517	290,472	398,487	1.7%
강원	36,804	1.4%	20,117	23,386	25,201	1.4%
충북	35,071	1.4%	17,143	17,790	21,361	3.2%
충남, 세종	91,950	3.6%	38,488	46,534	48,109	1.1%
전북	25,814	1.0%	14,648	16,326	16,439	2.0%



구분	국세		소득세+법인세			3년 평균 비중
	징수액 ('17년)	비중	'15년	'16년	'17년	
전남	82,200	3.2%	33,221	25,193	23,695	3.0%
경북	55,689	2.2%	39,693	44,230	41,563	3.7%
경남	59,383	2.3%	54,503	46,715	49,262	1.0%
제주	20,149	0.8%	13,043	14,150	15,553	0.0%

자료 : KOSIS

지방분권세 도입 시 세입재분배효과

- 기본공식
 - 재정당국 논리를 수용하여 기본요소(인구), 세원요소(GRDP), 조건불리요소(노령인구 비율) 배합으로 공식화
 - 공식 1 : 인구 50%, 노령인구비율 50% ⇨ 기본요소에 낙후도 가미
 - 공식 2 : 징수액 50%, 노령인구비율 50% ⇨ strict tax sharing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징수액을 근간으로 하되, 낙후도 가미
 - 공식 3 : 인구 1/3, GRDP 1/3, 노령인구비율 1/3 ⇨ 3개 요소를 균등 반영
- 지방분권세 총량은 크게 ① 지방세 비중 30% 달성의 필요액, ② 지방교부세 법정률분(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규모로 하는 경우(소득세 및 법인세의 30%), ③ 재정당국이 1차 재정분권 협의 과정에서 언급한 소득세+법인세 35%, ④ 지방세 비중 40% 달성의 필요액(소득세 및 법인세의 45%) 정도를 상정할 수 있음
 - 이 중에서 ①은 지방교부세 총량 40.8조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4.5조 원에 불과하므로 대안에서 제외함
 - ②는 '17년 기준 지방교부세 총량을 그대로 지방분권세로 대체한 것이므로 상기 3개 공식을 그대로 적용
 - ③ 및 ④는 지방분권세 총량 > 지방교부세 총량이므로 잔여액(지방분권세-지방교부세)을 균형조정재원으로 활용하며, 이를 위하여 잔여액에 노령인구비율을 적용하여 낙후지역에 할증 배분되도록 조정

| 지방분권세 총량과 조세구조 변화 |

(단위: 억 원)

구분	지방세 ①	지방분권세 ②	지방분권세 도입 후 지방세 ③=①+②	국세 ④	조세 총량 ③+④	지방세 비중	
	18.0%	894,246	244,820	1,139,066	2,639,864	3,778,930	30.1%
소득세 + 법인세	30.0%	894,246	408,161	1,302,408	2,476,522	3,778,930	34.5%
비중	35.0%	894,246	476,039	1,370,285	2,408,645	3,778,930	36.3%
	45.0%	894,246	612,050	1,506,296	2,272,634	3,778,930	39.9%

주 :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율 21%일 때 '17년 기준 추계치임

- 분석 결과 : 시도+시군구 합계 배분액
 - (가칭)지방분권세는 지방교부세를 대체하면서 시도 세목으로 운영하므로 시도 본청과 시군 몫을 포함시켜 배분한 후, 시도가 관한 시군 몫을 다시 배분하는 구조
 - 지방분권세 총량이 클수록 낙후지역 대상 균형조정재원이 확대됨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축소
 - 징수액, GRDP 등 세원요소가 반영될수록 부유 지자체에 유리
 - 그러나 상기 결과는 상대적일 뿐, 불교부단체인 서울 및 경기도 지방분권세 배분 대상이 됨으로, 非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배분되어야 할 지방분권세가 서울 및 경기도에 흡수되는 결과 초래
 -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에서 수도권 비중은 10.8%에 불과하였으나, 지방분권세 도입 시, 2배 이상으로 높아지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입격차는 확대
 - 특광역시와 광역도간 격차도 보통교부세보다 더 벌어져, 1차 재정분권의 지방 소비세율 인상에서 경험하였던 지역갈등이 재연될 개연성이 농후
 - 지역 간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조건불리요소를 반영할 경우, "TAX로서 정체성"은 훼손되며,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정액보조금으로 변질



| (가칭)지방분권세 도입 시 파급효과 : 시도+시군구 |

(단위: 억 원)

구분	보통 교부세 (17년)	소득세 및 법인세의 30%			소득세 및 법인세의 35%			소득세 및 법인세의 45%		
		공식 1	공식 2	공식 3	공식 1	공식 2	공식 3	공식 1	공식 2	공식 3
합계	408,161	408,161	408,161	408,161	476,039	476,039	476,039	612,050	612,050	612,050
서울	1,206	50,057	98,068	91,270	50,057	98,068	91,270	52,837	99,343	92,188
부산	8,923	26,931	27,915	27,731	26,931	27,915	27,731	30,215	29,421	28,815
대구	9,780	21,171	16,854	17,738	21,171	16,854	17,738	24,001	18,152	18,673
인천	8,235	21,135	16,034	18,439	21,135	16,034	18,439	23,491	17,115	19,217
광주	7,170	15,807	13,724	12,997	15,807	13,724	12,997	18,294	14,865	13,819
대전	7,117	15,708	12,975	12,598	15,708	12,975	12,598	18,133	14,087	13,399
울산	3,456	12,746	11,728	10,879	12,746	11,728	10,879	14,767	12,655	11,547
세종	787	8,935	8,700	6,533	8,935	8,700	6,533	10,876	9,590	7,175
경기	34,477	60,073	54,415	70,152	60,073	54,415	70,152	62,368	55,468	70,910
강원	46,855	20,771	18,048	16,101	32,319	28,869	27,253	50,489	48,522	48,055
충북	28,555	19,148	15,628	14,611	23,313	20,484	19,667	31,741	30,016	29,607
충남	36,100	22,289	19,644	18,650	28,404	25,826	24,978	39,559	37,686	37,242
전북	41,048	22,724	17,765	16,711	30,836	26,511	25,536	44,869	42,800	42,310
전남	57,094	24,978	21,643	19,408	39,196	34,960	33,073	61,432	59,084	58,527
경북	62,789	26,109	21,725	21,552	42,348	37,151	36,506	66,631	64,551	64,058
경남	42,347	25,447	19,639	21,966	32,929	28,169	29,356	45,355	43,727	43,341
제주	12,224	14,131	13,654	10,825	14,131	13,654	11,332	16,992	14,966	13,169
수도권	43,918 (10.8%)	131,265 (32.2%)	168,517 (41.3%)	179,861 (44.1%)	131,265 (27.6%)	168,517 (35.4%)	179,861 (37.8%)	138,696 (22.7%)	171,926 (28.1%)	182,315 (29.8%)
비수도권	364,243 (89.2%)	276,897 (67.8%)	239,644 (58.7%)	228,300 (55.9%)	344,774 (72.4%)	307,522 (64.6%)	296,178 (62.2%)	473,354 (77.3%)	440,125 (71.9%)	429,735 (70.2%)
특광역시	46,674 (11.4%)	172,490 (42.3%)	205,999 (50.5%)	198,186 (48.6%)	172,490 (36.2%)	205,999 (43.3%)	198,186 (41.6%)	192,613 (31.5%)	215,229 (35.2%)	204,832 (33.5%)
도 ¹⁾	327,011 (80.1%)	175,598 (43.0%)	147,747 (36.2%)	139,824 (34.3%)	243,475 (51.1%)	215,625 (45.3%)	207,701 (43.6%)	357,069 (58.3%)	341,353 (55.8%)	336,308 (54.9%)

주 : 1) 경기를 제외한 광역도 합계 및 비중임

- 분석 결과 : 시도 본청과 시군 배분액을 분리한 경우
 - 위 표의 지역별 배분액에서 시도 본청과 시군 몫을 분리하는 작업 필요
 - 2017년도 지방교부세 기준으로 개별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시군별 몫을 배분하는 것으로 가정

- 먼저, (가칭)지방분권세 총량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30%인 경우, 시·군에 배분되는 몫은 지방교부세에 비하여 최대 -12.6조 원 가량 감소하며, 특히 경기권 시·군은 증가하는 반면에 비경기권 시·군에서 크게 감소

|(가칭)지방분권세와 지방교부세 비교 : 소득세+법인세 30%|

(단위 : 억 원)

구분	지방교부세		(가칭)지방분권세											
			공식 1				공식 2				공식 3			
	시도	시군	시도	과부족	시군	과부족	시도	과부족	시군	과부족	시도	과부족	시군	과부족
합계	108,086	300,075	198,031	89,945	190,915	-109,161	229,045	120,959	162,872	-137,203	217,395	109,309	173,937	-126,138
서울	1,206	-	50,057	48,850	-	-	98,068	96,862	-	-	91,270	90,063	-	-
부산	8,313	610	25,091	16,778	-	-	26,008	17,695	-	-	25,836	17,523	-	-
대구	8,414	1,366	18,214	9,800	-	-	14,500	6,086	-	-	15,260	6,846	-	-
인천	5,136	3,100	13,180	8,044	-	-	9,999	4,863	-	-	11,499	6,363	-	-
광주	7,170	-	15,807	8,638	-	-	13,724	6,555	-	-	12,997	5,828	-	-
대전	7,117	-	15,708	8,591	-	-	12,975	5,858	-	-	12,598	5,481	-	-
울산	1,703	1,752	6,283	4,579	-	-	5,781	4,078	-	-	5,363	3,659	-	-
세종	787	-	8,935	8,147	-	-	8,700	7,912	-	-	6,533	5,746	-	-
경기	1,387	33,090	2,416	1,029	57,657	24,567	2,189	802	52,227	19,137	2,821	1,435	67,331	34,241
강원	9,622	37,233	4,266	-5,356	16,506	-20,727	3,706	-5,916	14,342	-22,891	3,306	-6,315	12,794	-24,439
충북	5,801	22,754	3,890	-1,911	15,258	-7,495	3,175	-2,626	12,453	-10,300	2,968	-2,833	11,643	-11,111
충남	6,341	29,759	3,915	-2,426	18,375	-11,385	3,450	-2,890	16,194	-13,565	3,276	-3,065	15,374	-14,385
전북	8,425	32,622	4,664	-3,761	18,060	-14,563	3,646	-4,779	14,119	-18,503	3,430	-4,995	13,281	-19,341
전남	9,253	47,840	4,048	-5,205	20,930	-26,911	3,508	-5,745	18,136	-29,705	3,145	-6,108	16,263	-31,578
경북	9,182	53,607	3,818	-5,364	22,291	-31,316	3,177	-6,005	18,548	-35,059	3,152	-6,030	18,400	-35,206
경남	6,005	36,343	3,608	-2,396	21,839	-14,504	2,785	-3,220	16,854	-19,489	3,115	-2,890	18,851	-17,492
제주	12,224	-	14,131	1,907	-	-	13,654	1,430	-	-	10,825	-1,399	-	-

- (가칭)지방분권세의 총량을 확대하면, 확대된 분량만큼 지방교부세에 비하여 줄어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배분이 가능
- 본 연구에서는 추가 배분도 지역낙후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하였는데, (가칭) 지방분권세의 규모를 소득세 및 법인세의 35% 수준으로 확충하여도 비수도권 시·군의 몫은 지방교부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비수도권 시·군이 받는 재정충격은 (가칭)지방분권세의 총량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45%까지 확대하여야 소멸



- 이는 정부가 재정분권의 장기목표로 설정한 국세대 지방세의 (6:4) 수준까지 (가칭) 지방분권세의 총량이 확대되어야 지방교부세 이상의 몫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정책목표치 달성도 가능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기도 시·군에 배분되는 몫이 2조 원 이상 증가하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격차 확대를 통제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몫이 증가하도록 배분공식을 설계할 경우, TAX가 아니라 이전재원에 가까워 지는 모순에 봉착

|(가칭)지방분권세와 지방교부세 비교 : 소득세+법인세 35%|

(단위 : 억 원)

구분	지방교부세		(가칭)지방분권세											
			공식 1				공식 2				공식 3			
	시도	시군	시도	과부족	시군	과부족	시도	과부족	시군	과부족	시도	과부족	시군	과부족
합계	108,086	300,075	209,728	101,642	247,096	-52,980	240,759	132,673	219,036	-81,039	229,592	121,506	229,618	-70,458
서울	1,206	-	50,057	48,850	-	-	98,068	96,862	-	-	91,270	90,063	-	-
부산	8,313	610	25,091	16,778	-	-	26,008	17,695	-	-	25,836	17,523	-	-
대구	8,414	1,366	18,214	9,800	-	-	14,500	6,086	-	-	15,260	6,846	-	-
인천	5,136	3,100	13,180	8,044	-	-	9,999	4,863	-	-	11,499	6,363	-	-
광주	7,170	-	15,807	8,638	-	-	13,724	6,555	-	-	12,997	5,828	-	-
대전	7,117	-	15,708	8,591	-	-	12,975	5,858	-	-	12,598	5,481	-	-
울산	1,703	1,752	6,283	4,579	-	-	5,781	4,078	-	-	5,363	3,659	-	-
세종	787	-	8,935	8,147	-	-	8,700	7,912	-	-	6,533	5,746	-	-
경기	1,387	33,090	2,416	1,029	57,657	24,567	2,189	802	52,227	19,137	2,821	1,435	67,331	34,241
강원	9,622	37,233	6,637	-2,985	25,682	-11,551	5,928	-3,693	22,941	-14,292	5,596	-4,025	21,656	-15,577
충북	5,801	22,754	4,736	-1,065	18,577	-4,177	4,162	-1,640	16,322	-6,431	3,996	-1,806	15,672	-7,082
충남	6,341	29,759	4,989	-1,352	23,415	-6,345	4,536	-1,805	21,290	-8,470	4,387	-1,953	20,591	-9,169
전북	8,425	32,622	6,329	-2,096	24,507	-8,116	5,442	-2,984	21,070	-11,553	5,241	-3,184	20,295	-12,328
전남	9,253	47,840	6,353	-2,901	32,844	-14,997	5,666	-3,587	29,294	-18,546	5,360	-3,893	27,713	-20,127
경북	9,182	53,607	6,193	-2,989	36,155	-17,452	5,433	-3,749	31,718	-21,889	5,339	-3,844	31,167	-22,440
경남	6,005	36,343	4,669	-1,335	28,260	-8,083	3,994	-2,010	24,175	-12,168	4,163	-1,842	25,194	-11,149
제주	12,224	-	14,131	1,907	-	-	13,654	1,430	-	-	11,332	-892	-	-

| (가칭)지방분권세와 지방교부세 비교 : 소득세+법인세 45% |

(단위 : 억 원)

구분	지방교부세		(가칭)지방분권세											
			공식 1				공식 2				공식 3			
	시도	시군	시도	과부족	시군	과부족	시도	과부족	시군	과부족	시도	과부족	시군	과부족
합계	108,086	300,075	249,474	141,388	340,830	40,754	271,704	163,618	322,941	22,866	259,295	151,209	335,090	35,014
서울	1,206	-	52,837	51,631	-	-	99,343	98,137	-	-	92,188	90,982	-	-
부산	8,313	610	28,150	19,837	-	-	27,411	19,098	-	-	26,846	18,533	-	-
대구	8,414	1,366	20,648	12,234	-	-	15,617	7,203	-	-	16,064	7,650	-	-
인천	5,136	3,100	14,649	9,514	-	-	10,673	5,537	-	-	11,984	6,849	-	-
광주	7,170	-	18,294	11,125	-	-	14,865	7,695	-	-	13,819	6,649	-	-
대전	7,117	-	18,133	11,016	-	-	14,087	6,970	-	-	13,399	6,282	-	-
울산	1,703	1,752	7,279	5,576	-	-	6,238	4,535	-	-	5,692	3,988	-	-
세종	787	-	10,876	10,089	-	-	9,590	8,803	-	-	7,175	6,387	-	-
경기	1,387	33,090	2,508	1,122	59,860	26,770	2,231	844	53,237	20,147	2,852	1,465	68,058	34,968
강원	9,622	37,233	10,368	746	40,121	2,888	9,964	342	38,558	1,325	9,868	247	38,187	954
충북	5,801	22,754	6,449	647	25,293	2,539	6,098	297	23,918	1,165	6,015	214	23,592	839
충남	6,341	29,759	6,948	607	32,611	2,851	6,619	279	31,067	1,308	6,541	201	30,701	942
전북	8,425	32,622	9,210	784	35,659	3,037	8,785	360	34,015	1,393	8,684	259	33,625	1,003
전남	9,253	47,840	9,956	703	51,476	3,635	9,576	323	49,508	1,667	9,485	232	49,041	1,201
경북	9,182	53,607	9,744	562	56,887	3,280	9,440	258	55,111	1,505	9,368	186	54,690	1,083
경남	6,005	36,343	6,431	426	38,924	2,581	6,200	196	37,526	1,184	6,146	141	37,195	852
제주	12,224	-	16,992	4,768	-	-	14,966	2,743	-	-	13,169	945	-	-

6. 소결

- (가칭)지방분권세의 논리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tax sharing은 개념 및 분류기준에서 OECD 내에서도 확고히 정립된 상태가 아님
 -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유보
- 이론적으로 tax sharing은 상급정부와 하급정부가 징수권을 공유하여야 하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징수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으며, 정부 간 재정조정이론



에서도 상급정부가 자신의 세수를, 공식에 입각하여 배분하고, 하급정부의 세출자율성을 보장하면 이전재원으로 분류하므로 지방교부세는 이전재원임

- tax sharing은 조세이므로 징세능력 기준으로 세수 단계에서 배분함. 반면에 이전재원은 개념적으로 세입역량과 세출수요를 같이 고려한 재정능력(fiscal capacity)을 중시하므로 상급정부의 세출 단계에서 배분됨. 그리고 각종 조건불리요소를 고려하여 세출수요를 측정하는데, 이 부분이 tax sharing과 이전재원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오스트레일리아가 자신의 GST를 tax sharing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도 조건불리요소 때문이며,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를 tax sharing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정도 여기에서 연유
- (가칭)지방분권세 도입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크게 확대시키는 이유도 조건불리요소를 지방교부세만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임
 - 어떤 공식을 적용하든 비수도권 도 지역의 재정충격은 회피할 수 없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시·도 본청과 시·군 사이의 갈등이 1단계 재정분권에서 경험하였던 것 이상일 것으로 예상
- 이런 상황에서 (가칭)지방분권세 도입이 갖는 실익, 특히 재정분권의 취지와 경제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회의적임. 사실, 지방교부세가 이전재원인지, tax sharing에 해당하는지가 정책적으로 논쟁을 할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임
- 지역 간의 극심한 갈등을 예상하면서, 이러한 논쟁이 의미를 지니려면 (가칭)지방분권세가 지방세로서 가격기능을 발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재정의 한계책임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어야 하나, 세원이양이 아닌 세수이양인 이상 지방교부세와 차별화를 기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분식 재정분권”이라는 비판을 수밖엔 없음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1. 지방교부세 당면현안

지역 간 재정격차와 관련된 논란

- 시·도 표준세입(지방세+보통교부세) 지니계수는 '02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5년부터 상승하였음
 - 지방세 지니계수도 '15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바, 이는 지방세의 지역격차 확대 양상을 보통교부세가 교정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
-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 약화는 명목 및 순재분배효과에서도 확인됨
 - 보통교부세의 명목재분배효과(지방세와 표준세입의 지니계수 차이), 그리고 순위변동 까지 고려한 순재분배효과는 이미 '12년부터 하락

| 재정분권 이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기능(시·도) |

구분	표준세입 지니계수(a)	지방세 지니계수(b)	명목재분배 (c=a-b)	순위변동효과 (d)	순재분배효과 (c-d)
'02	0.520	0.593	-0.073	0.003	-0.075
'03	0.505	0.585	-0.079	0.004	-0.083
'04	0.488	0.568	-0.080	0.004	-0.085
'05	0.471	0.562	-0.092	0.005	-0.097
'06	0.466	0.551	-0.085	0.006	-0.091
'07	0.445	0.553	-0.108	0.007	-0.115
'08	0.438	0.557	-0.118	0.015	-0.133
'09	0.432	0.558	-0.125	0.016	-0.142
'10	0.417	0.519	-0.102	0.005	-0.107



구분	표준세입 지니계수(a)	지방세 지니계수(b)	명목재분배 (c=a-b)	순위변동효과 (d)	순재분배효과 (c-d)
'11	0.406	0.513	-0.107	0.005	-0.112
'12	0.394	0.510	-0.116	0.009	-0.124
'13	0.389	0.505	-0.117	0.010	-0.127
'14	0.394	0.494	-0.100	0.005	-0.106
'15	0.421	0.508	-0.087	0.005	-0.092
'16	0.418	0.504	-0.085	0.007	-0.092

주 : 지니계수는 0을 기준으로 숫자가 증가할수록 격차가 크다는 의미임

산정제도와 관련된 논란

- 보통교부세가 가장 빈번히 비판받는 대목이 산정제도가 복잡하여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교부액 예측이 어려워 계획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것임
- 기준재정수요와 관련해서는 균형수요 부분에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기초수요는 인구 관련 측정항목의 비중이 60% 이상
 - 반면에 지역균형수요는 입지, 자연환경,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 각종 조건불리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또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쉽고 친절한 정책홍보 부족, 자치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피드백 부족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 기준재정수입의 경우, 그동안 관심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으나, 기준재정수요 못지않게 제도개선의 여지가 큰 편임
 - 세목별로 추정하기 때문에 전체 지방세액을 대상으로 추정하는 방식에 비하여 추정 오차가 더 클 잠재성이 상존
 - 측정 오차의 가능성 때문에 결산치와 산정값 사이의 오차를 80% 정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산으로 인하여 산정액이 크게 영향을 받아 보통교부세의 예측 가능성,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저해

- 기준재정수입에서 정산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최근 1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으며, '16년 이후에는 플러스 수치를 보여 기초수입의 과다 산정 → 보통교부세 감소 → 지방재정 계획성 저해 발생

| 연도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산분의 영향력 |

구분	정산분		기준재정수입 (b)	보통교부세 (c)	a/b	a/c
	합계 (a)	지방세 세외수입				
'19	74,443	68,774 5,669	769,743	476,026	0.097	0.156
'18	69,118	64,658 4,460	679,424	424,696	0.102	0.163
'17	36,155	33,592 2,562	592,044	375,775	0.061	0.096
'16	2,364	-450 2,814	511,876	332,438	0.005	0.007
'15	-30,864	-33,568 2,704	485,817	320,509	-0.064	-0.096
'14	-16,204	-16,413 209	479,847	318,845	-0.034	-0.051
'13	-49,364	-46,863 -2,501	428,695	314,480	-0.115	-0.157
'12	-39,764	-37,741 -2,023	414,936	291,884	-0.096	-0.136
'11	-28,076	-30,566 2,491	434,121	257,755	-0.065	-0.109
'10	-13,919	-19,731 5,813	411,426	232,403	-0.034	-0.060
'09	-2,495	-5,092 2,598	409,742	240,925	-0.006	-0.010
'08	-679	-640 -39	408,899	227,234	-0.002	-0.003
'07	-11,141	-11,016 -125	357,456	198,421	-0.031	-0.056
'06	11,088	8,578 2,509	350,963	177,543	0.032	0.062
'05	29,068	26,041 3,027	353,048	170,776	0.082	0.170

주 : 불교부단체 포함하여 시산한 결과임

2.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기본방향

- 보통교부세의 정체성을 재원보장에 둘 것인지, 재정형평에 둘 것인지에 따라 산정 제도의 방향성이 결정됨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2단계 재정분권의 폭과 범위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
 -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자원보장기능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지방분권세 도입 방어가 급선무인 행안부 입장에서는 재정형평기능 확대가 조심스런 상황
 - * 기재부는 지역균형 명분으로 인구 과소지역에 과다 교부되고, 이로 인하여 지방세출의 비효율성을 조장하며, 반면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복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국비지원을 요구하므로 인구 과소지역은 교부액 축소, 인구가 많은 지역은 교부액 확대를 주장
 - 또한, 재정형평성 강화는 복잡한 산정제도를 요구하므로 보통교부세의 간소화, 투명화, 예측성 제고 등과 충돌되는 딜레마에 직면
-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다소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므로 당분간 자원보장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하되, 2단계 재정분권에서 세입분권의 강도 및 범위를 고려하여 재정조정기능을 검토함
- 따라서 세입분권이 대폭 확대되지 않는 이상, 보통교부세의 정체성은 ① 자원보장기능에 두고, ② 이차적으로 지역간 재정형평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되, ③ 지금보다 재정조정기능이 좀 더 강화되도록 함

현행 제도 내에서 산정제도 개선

-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 산정 시 반영되는 자체노력지표의 보완을 모색함
 - 자체노력지표는 과거 정부의 중점시책에 따라 반영된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어 분권 시대에 부적절하며,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교부액 예측을 어렵게 하므로 자구노력 촉진에 영향력이 큰 지표 중심으로 간소화
 - * 기준재정수요 자체노력지표 :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위탁비, 지방보조금 등은 유지하되, 의회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폐지 가능
 - * 기준재정수입 자체노력지표 : 실효성 및 지표의 투명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 지방세 감면 축소, 세원발굴 및 관리 등은 재검토 가능

-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자체사업비 등과 관련된 측정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인구과소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동종 지자체 중 가장 재정효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표준으로 하여 경비를 산정할 수도 있음
-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확대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1안) 일본처럼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은 기준재정수입에 100% 산입
 - (2안)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혜택이 큰 자치단체는 $(80\% - \alpha\%)$ 의 산입률을 적용하며,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거나 손해인 자치단체는 $(80\% + \alpha\%)$ 산입률 적용

| 참고 : 차등산입률 적용(예시) |

구분	지방세 평균 1/2 이하	지방세 평균 1/2 초과 - 1.5배 미만	지방세 평균 1.5배 이상
80% ± 5%	70%	80%	90%
80% ± 10%	60%	80%	100%

주 : 1) 시·도, 시·군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자치단체를 분류함
2) 당해 자치단체 직전 3년 평균치 기준

보통교부세 구조개편

-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의 조화, 산정제도의 근원적 보완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의 제도개선 수준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내에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을 전담하는 계정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보정수요가 사실상 지역 간 재정형평기능을 수행하므로, 현재 보정수요 묶에서 조금 넘는 규모를 재정형평기능 전담계정으로 설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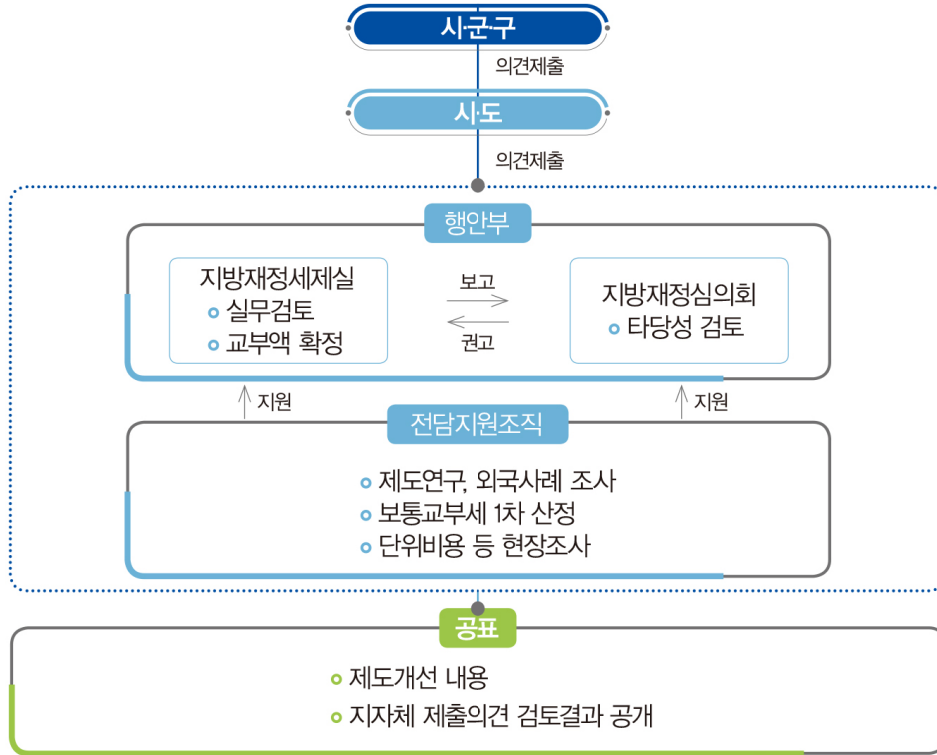


- 이 경우 재원보장기능 전담계정은 보통교부세의 80%, 재정형평기능 전담계정은 보통교부세의 20% 정도로 구조화 가능
- 재원보장기능 전담계정은 인구 등 대표 통계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방식으로 표준행정수요를 측정
- 재정형평기능 전담계정은 재정력역지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교부

보통교부세 거버넌스 정비

-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비판적 시각이나 자치단체의 불만(고충)의 상당 부분은 중앙-지방 간 재정협력체계의 미비에서 기인함
 - 복잡하다는 비판은 산정제도에 대한 친절한 해설서 부족, 쌍방향 연찬회 등 의사소통기회 제한, 산정내역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정보공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되는 오해가 상당수
 -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요청에 대한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제도개선 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연결
-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 자치단체의 정책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Top-Down 방식에서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쌍방향, 혹은 Bottom-Up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며, 검토 결과는 해당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
 - 일본처럼, 자치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 또는 받은 의견에 대한 대답의무 등을 명시하는 법령 개정 필요
 - 교부세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는 외부 전담지원조직의 설치를 검토

| 지방교부세 거버넌스 정비 구상 개념도 |



IV

전라북도 대응방향

1. 재정분권 관련 상황 진단

-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지가 강한 편이라 볼 수 없음
 - 사회복지비, 일자리창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자수요가 여전히 큰 상태
 - 상기 이유로 내년도 예산은 확장적으로 편성한 바, 2단계 재정분권에 필요한 재원을 염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
-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 도입이 일차 걸림돌인 바, 1단계와 달리 전북도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음
 - 지방분권세가 도입되지 않는다 하여도, 지방교부세 총량이 줄어들거나, 총량이 유지된다 하여도 지자체의 자구노력 촉진 방향으로 제도개편 필요

2. 전라북도의 대응방향

- 지방분권세 도입과 관련하여
 - 지방분권세는 서울, 경기 등 불교부단체도 배분 대상이 되는 구조
 - 때문에, 지방분권세의 배분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든,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전북도 세입에는 불리
 - 이와 관련하여 포럼, 세미나 등의 형식을 개최하여 TF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초빙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필요

- 보통교부세 제도혁신과 관련하여
 - 경북, 전남, 충북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지역 비중이 적은 편이므로 ① 지방소득세 기준 외 일본처럼 과거 20년에서 30년 인구 대비 감소율을 추가하며, ② 도서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므로 도서지역 가중치를 높이도록 요구
 - 차등산업률제도 도입을 요구
 - * 재정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기준재정수입 산업률을 80% 미만 적용
 -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분 전액을 기초수입에 산입
 - 산정제도 간소화 관련하여,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 계정의 설치, 자구노력 지표 간소화 등을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판단
 - 거버넌스의 경우, 다른 시·도와 연대하여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답변 의무화 등 지자체의 정책참여 제도화를 요구
- 국세의 지방이양 등 세입확충과 관련하여
 - 지방이양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동산분)양도세, (유흥시설 관련)개별소비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편차가 크고, 규모도 작아 실익이 크지 않은 편
 - 종부세 및 주세의 지방이양은 각각 종합부동산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지방에 전액 이전되는 재원이므로 재정분권 취지와 배치
 - 만약, 지방소득세율 인상이나 전술한 국세의 지방이양 추진할 경우에는 혜택을 크게 보는 광역시나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가능
 - 상기 국세들의 지방이양 보다는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더 바람직
 - * 지방소비세는 (1:2:3) 안분비율 적용으로 지역편차를 완충하므로 다른 국세의 지방이양보다 유리
 - * 이미, 10여년에 걸친 운영 경험으로 제도안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



| 참고 : 국세의 지방이양 논거 및 비교우위 |

세목	장·단점	국세 지방이양 판단준거				
		효율성	용이성	탄력성	책임성	공평성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 및 국세 소득세율 인하(납세부담 총립) 납세자 조세부담 변동 지역 간 세수편차는 광역-기초 세수 공유로 대응 	○	○	×	×	×
종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부세 전액 지방이양 지방세입 순증효과 없음 국가 차원의 부동산시장 안정 및 소득재분배 애로 	○	○	○	×	×
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까지 세원관리 일원화로 세정 효율화 취득세, 재산세와 연계로 징수율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소득재분배 왜곡 지방소득세와 중복 	○	○	×	×	×
개별소비세 (특정 유흥 및 시설 입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성이 강한 특정장소의 입장행위와 특정유흥음식행위에 대해 이양 과세대상의 지역성이 강하여 지방세 보편성·정착성 원칙에 부합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유지로 납세자 혼란 및 추가비용 발생이 없음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도입 	○	○	○	×	×
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세 전액 지방이양 균특회계 자원 감소로 지방세입 순증효과 없음 외부불경제 내부화, 지방세로서 보편성, 정착성 원칙에 부합 소비과세로서 지방세의 재산과세 비중 완화에 기여 	○	○	○	×	×

▣ 참고문헌 ▣

- 구균철(2017), 「공동세 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정훈(2015), “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 : 비판적 평가 및 우리나라 재정분권에 대한 시사점”, 『재정학연구』 8(3), pp. 149~191.
- 안중석(2015),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안중석(2019), “공동세와 국세-지방세 재배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차 지방재정전략포럼 발표논문.
- 유태현(2018),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검토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 337~361.
- _____(2019),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영향과 대응전략”,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 319~341.
- 유태현·임상수(2018),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기반확충 실행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원희(2011), 「지방소비세제의 확대 발전방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주최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
- 임상수(2018),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세 강화」,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조기현(2013), 「보통교부세 재정형평기능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기현·여효성(2018), 「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만수(2007), 「정부계층별 세원배분원칙과 지방세의 가격기능」, 한국경제연구원.
- Bahl, Roy and J. Linn(1992), *Urban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 Bird Richard M.(2015), *Fiscal De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ing Tax Administration: Different Questions, Different Answers*, Inter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Working Paper 15-09, Georgia State University.
- Blöchliger Hansjörg and David King(2006),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 OECD Working Papers on Fiscal Federalism No. 2.
- Blöchliger Hansjörg and Petzold, Oliver(2009), *Finding the Dividing Line Between Tax Sharing and Grants: A Statistical Investigation*, OECD Working Papers on Fiscal Federalism No. 10.
- Kim Junghun(2015), “The Role of Intergovernmental Fiscal Institutions : The Case of Tax Sharing”, Kim Junghun and Blöchliger(eds.) *Institution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 Challenges Ahead*, OECD.
- Karl Heinz Hausner(2003), *Vergleich des bundesstaatlichen Finanzausgleich in Österreich und Deutschland vor dem Hintergrund der Ökonomischen Theorie des Föderalismus' Reihe V Volks- und — 266 — Betriebswirtschaft*, Bd./Vol.3011,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 McLure, C.(2001), “The Tax Assignment Problem : Ruminations on How Theory and Practice Depend on History”, *National Tax Journal* 52, pp. 339~364.
- Oates Wallac E.(1996), “Taxation in a Federal System : The Tax-Assignment Problem”, *Public Economic Review* 1, pp. 35~60.
- OECD(1999), *Taxing Power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OECD Tax Policy Studies No. 1.
- 神野直彦(2009), “財政分権化の アジェンダ”, 野村(弘子編)「分権化と 開発」アジア經濟研究所 調査研究報告書.
- 椎川忍(2005), “三位一體改革の全體像に至る過程とその評價(下)”, 『自治研究』 제81권, 제4호 및 제5호.
- 出井信夫(2008), 圖說 地方財政データブック, 學陽書房.
- 財務總合研究所, 「主要 諸地外國における 國と地方の 財政役割の 狀況 - 北歐諸國編」, 2006. 9.
- 總務省(2019), 地方交付稅等第 總額(當初豫算)の推移.
- 總務省(2019), 地方交付稅率第の 變遷.
- 總務省, 第198回 国会 平成31年度 地方交付稅關係參考資料.